



## 제 2 부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 개인적 법익 침해
- | 사회적 법익 침해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

시정권고

사례집



##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16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7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33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6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43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45

# 제1장 사생활 침해

## 사례. 1

의결번호	제2018-51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5일 포토면
기사제목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 1. 보도내용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객선 좌초 사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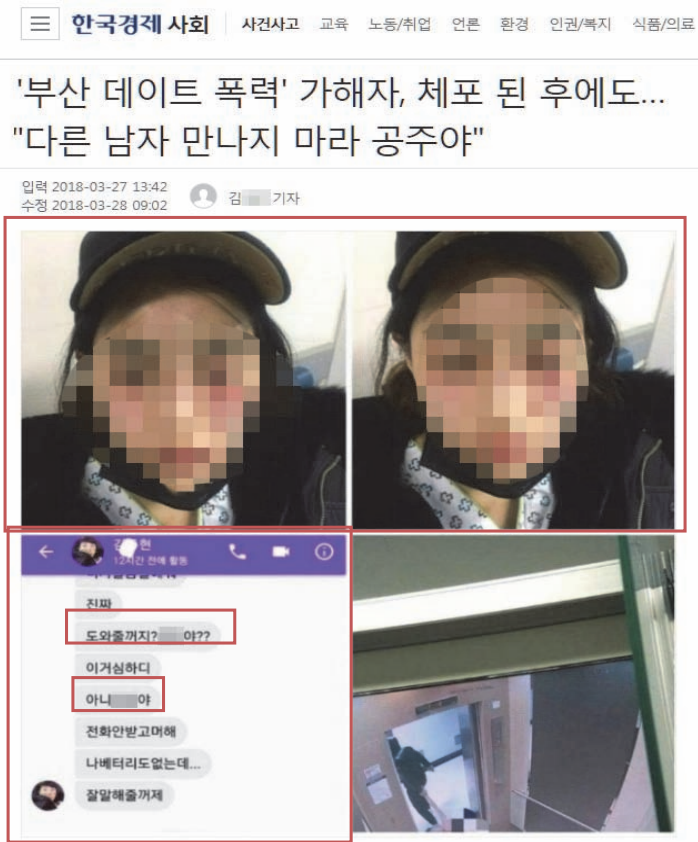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8-514호
매 체 명	한경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1. 보도내용**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제하의 사진



부산 데이트 폭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도와줄꺼지?○○야?? (중략)  
아니○○야(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일부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노출하였다.

피해자의 성명 및 일부 초상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8-639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2일 A1면
기사제목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000’ 전도 포착

**1. 보도내용**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000’ 전도 포착」 제하의 사진 및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종교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위법한 취재수단을 사용하여 획득한 사진, 영상 및 녹취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에 해당하고 그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공적 관심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종교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발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하여 동의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적 공간 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8-640호
매 체 명	인터넷 국제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30일 뉴스면
기사제목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1. 보도내용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제하의 사진

## 국제신문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국제신문 0111 기자 news@kookje.co.kr | 입력 : 2018-05-30 00:02:52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한편 ○○○는 인기리에 방영된 ‘쇼미더머니3’를 통해 아들 ○○를 향해 말하는 듯한 노래 ‘187’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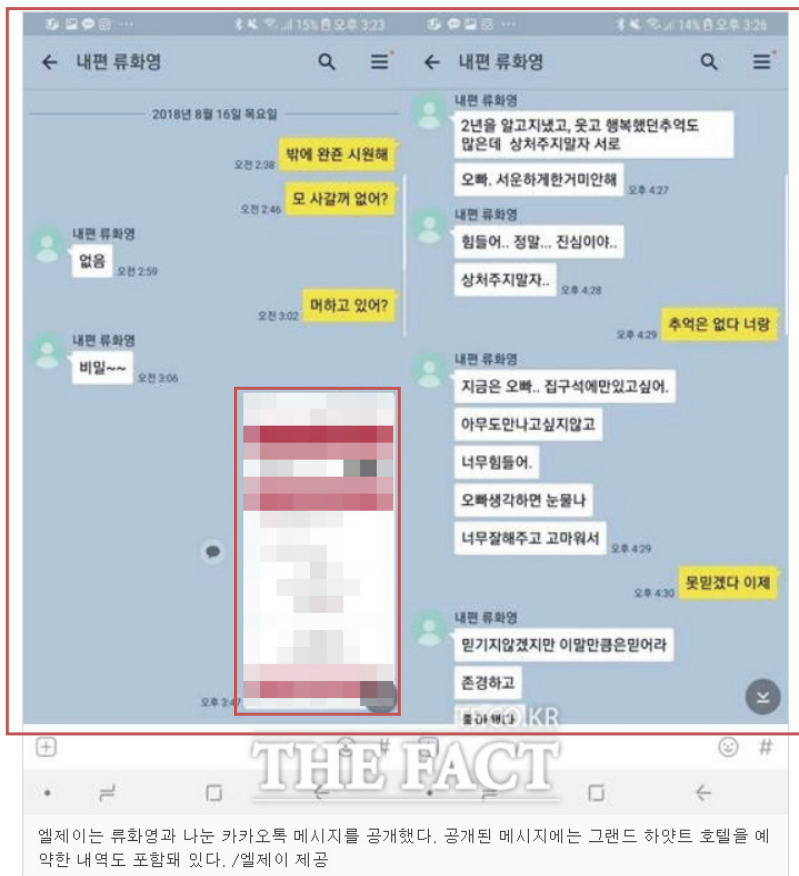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성명, 초상을 공개하였다. 개인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18-972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23일 연예면
기사제목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1. 보도내용**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제하의 대화내용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방송인 엘제이(41·본명 이주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25)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와 호텔을 예약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엘제이는 23일 <더팩트>에 류화영과 나눈 카톡 메시지를 여러 장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엘제이가 류화영에게 “밖에 완전 시원해. 뭐 사갈 것 없어?”라며 호텔 예약 내역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예약 날짜는 지난 17일 체크인, 19일 체크아웃으로 돼 있다. 장소는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함께 묵은 것으로 추측되는 호텔예약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호텔예약내역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내밀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개될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b>의결번호</b>	제2018-1213호
<b>매 체 명</b>	법률방송뉴스
<b>보도일시 및 위치</b>	2018년 11월 13일 뉴스면
<b>기사제목</b>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 1. 보도내용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제하의 SNS 대화 내용 중

「(전략) 그리고 ○○○잖아. (이하 생략)」

「(전략) 지난 9일 스타트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논산의 ○○○ 재단 고등학교의 ○○○ ○○ 여교사는 지난 2017년 학교에서 근무하며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산의 ○○○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 ○○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사례. 7

의결번호	제2018-613호
매 체 명	인터넷 스포츠동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5일 뉴스면
기사제목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 1. 보도내용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의 제목 및 사진

스�포츠동아 연예 | 야구 | 축구&종합 | 화보 | 카툰 | 도깨비뉴스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8-05-05 14:50:00

가 가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올림픽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한국인 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임 씨는 ○○○ 태권도 협회에 소속돼 총 4차례 ○○○ 태권도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지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8

의결번호	제2018-529호
매 체 명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종합]"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1. 보도내용

「[종합]"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청주시 ○○구 ○○면 ○○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약 복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9

의결번호	제2018-1149호
매 체 명	온라인 중앙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9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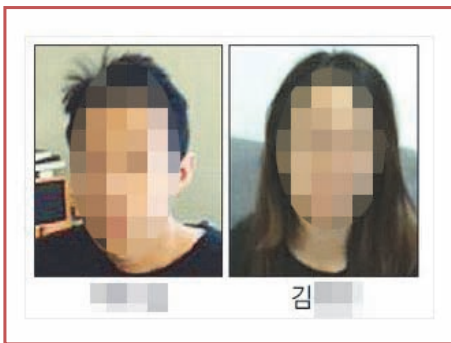
1. 보도내용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사진



보험금 100만달러도 착복

LA지역 한인 부부가 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25일 거주보험국(CDI)은 "보험 에이전트인 김( )씨와 아내 김( )씨가 보험 사기와 관련,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25일 거주보험국(CDI)은 “보험 에이전트인 ○○ 김(○○)씨와 아내 김○○(○○)씨가 보험 사기와 관련,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8-645호
매 체 명	인터넷 일간스포츠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 1. 보도내용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제하의 사진

#### 일간스포츠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중앙USA] 입력 2018.05.09 02:25

원자크기 + -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7일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 지역 ○○○○○○○○○○○에 있는 주택에서 이○○(미국이름 ○○ 리·○○)씨가 부인 김○○(미국이름 ○○ 김·○○)씨를 총으로 쏘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본인도 스스로 총으로 쏘 자살했다.(중략)

부인 김씨는 지난 3년간 ○○○ ○○○ ○○대에서 엔지니어링·테크놀로지과 부교수로 근무해 왔다. (중략)

남편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2016년 1~6월까지도 부인 김씨와 함께 ○○○ ○○○ 대학에서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업, 근무처,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8-373호
매 체 명	인터넷 중부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2월 21일 연예면
기사제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 …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

### 1. 보도내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의 제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송○○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송○○은 ○○대학교 ○○학번으로 올해 ○○세다. 그는 올해 ○○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로에 데뷔한 신인 연극 배우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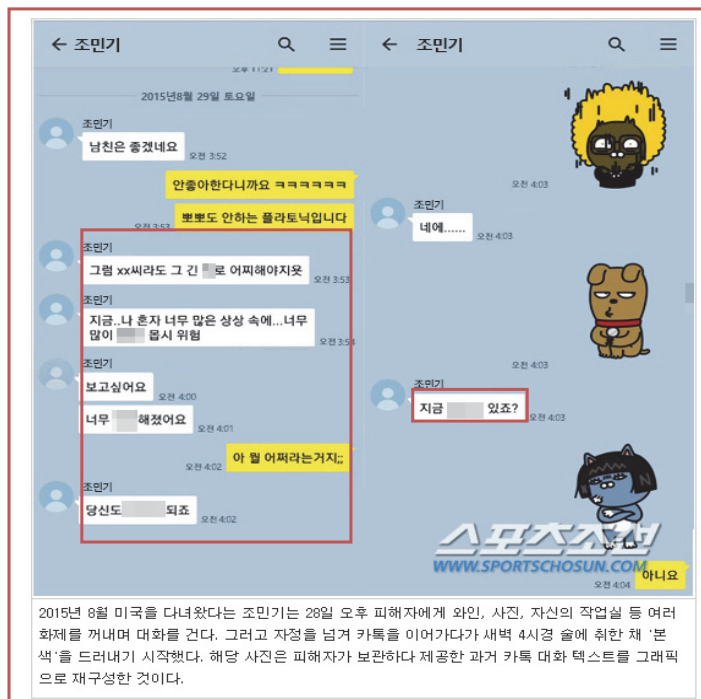
##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8-383호
매 체 명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2월 27일 연예면
기사제목	[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 1. 보도내용

「[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8-379호
매 체 명	동아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7일자 연예면
기사제목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맞은 어떡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

### 1. 보도내용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맞은 어떡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의 제목 「(전략) 또 차 안에서도 “몸부림 한번 치시죠 거기 맞은 어떡가요 ○○ 이런 말을 하다가 불쑥 뭔가 성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다. 가슴을 확 꼬집는다든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번 얼굴을 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8-618호
매 체 명	인터넷 제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4월 23일 뉴스면
기사제목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1. 보도내용**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의 제목 및 사진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18.04.23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사진 : 사이버 오프 홈페이지 캡처 ○○○ 초단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수영복 차림의 바둑 두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8-650호
매 체 명	세계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17일 연예면
기사제목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 1. 보도내용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제하의 전문

「(전략)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고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를 만졌습니다. (중략)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웃으려면 웃었고 손 하트를 하라고 하면 하트를 했고 다리를 벌리고 허를 내밀어 보라 하면 그렇게 했고 가슴을 움켜쥐라고 하면 움켜쥐었고 팬티를 당겨 ○○가 보이게 하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손가락을 ○○에 넣어보라고도 했습니다. (중략)

별짓 다했구나, ○○, ○○ 등등...(중략)

성희롱은 보통 이상입니다. “예원 씨 가슴이 참 예뻐요, ○○가 참 예쁘네요, 손가락을 대볼래요?” 이런 식 으로 우요. 그런 속옷이 너무 입기 싫어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템포를 쥐여줍니다. 그리고 “템포 꺼 그러면. 템포 끼고 주변에 피는 댕고 나와”라고 말합니다. 제 엉덩이에 보루지 흉터가 있다고 보기 좋지 않고 더럽다며 컨실러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엉덩이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화장을 대충 하고 온 날엔 얼굴을 보며 화장이 이게 뭐냐고 사진 잘 찍히려면 화장 고치고 나오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타킹을 주고 팬티를 입지 말고 스타킹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비친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천천히 스타킹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한번 다시 하자고 신고 다시 벗으라고도 시킵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8-921호
매 체 명	대구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7월 9일 05면
기사제목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 1. 보도내용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8일 낮 12시49분께 ○○군 ○○읍 ○○리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 환자 백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모(○○) 경위가 찔렸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이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8-658호
매 체 명	인터넷 사건의 내막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16일 사회의 진실면
기사제목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 1. 보도내용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회적 법익 침해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8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50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53
제4장 성관련 보도	55
제5장 자살관련 보도	57
제6장 폭력묘사	59
제7장 충격·혐오감	63
제8장 기사형 광고	69

#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8-1230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29일
기사제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 1. 보도내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의 제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의 한 교민은 29일 “정 전 장관이 어제 선양을 경유해 북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이 대한항공 KE831편으로 선양에 도착 후 고려항공 JS156편으로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미국 등의지지 하에 남북이 30일부터 북측구간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의 방북은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정 전 장관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

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접근제한성 등의 특성상 취재 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8-92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7월 1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일본 3대 엽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 1. 보도내용

「(전략) 소년들은 준코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강제로 술을 먹여 토하게 만든 다음 토사물을 먹게 했다.

준코는 배설한 소변, 대변 심지어 맞아서 나온 혈흔까지 핥아먹었다. 소년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과 발에 비닐봉지를 쓰고 폭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손, 발, 정강이, 무릎 등에 라이터 기름을 발라 불을 질러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즐겼다.

또한 ○○과 ○○ 안에서 폭죽을 터트렸는데, 실제로 부검 결과 준코의 대장에 심각한 화상이 있었다고 알려졌다.(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본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가학적인 폭력장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8-1229호
매 체 명	인터넷 팸타임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19일 라이프면
기사제목	사이코패스 조두순 사건 정리, 상상할 수 없을만큼 ‘끔찍’...출소일, 출소날짜, 형량, 얼굴에 국민 분노

### 1. 보도내용

「(전략) 이후 ○과 ○○을 통한 성폭행으로 김 양의 머리 부분이 크게 다쳤고 번기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사용하는 물품으로 ○○을 빼려는 시도로 탈장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예정 사실과 함께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도 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3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8-1000호
매 체 명	뉴스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 1. 보도내용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특히 송씨는 지난해 2월께 주행거리 조작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라는 이름의 차량 진단기를 수입, 기기를 자동차의 ○○○○ ○○○○○(○○○) 단자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인가 받지 않은 신형 장비인 ○○○○○○○○○○는 주행거리 조작 흔적이 남지 않을 뿐더러 5분 내외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수법 및 사용된 장비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4장 성관련 보도

### 사례. 22

의결번호	제2018-813호
매 체 명	매경 ECONOMY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30일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면
기사제목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

### 1. 보도내용

「(전략) 토약질 나는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한, 입속 깊숙이 ○○을 넣고 핥으면서 고군분투한다. (중략)

혼자서 미련 떨어지며 무턱대고 빨기보다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만 공략할 것이 아니라 ○○과 ○○과 ○○까지 좌우로 길게 하모니카를 불 수만 있다면 최고일 터다. ○○, ○○○, ○○ 등을 핥아주면서 젓꼭지나 엉덩이까지 쓰다듬어드리면 미치고 환장(換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나가자빠질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주는 데가 있다. 너무 좋아서 팔짝 뿜 노릇이다. 이름하여 립카페다. (중략)

무조건 옷을 벗기고 섹스를 하거나 여자가 갑자기 남자의 ○○를 애무해주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이게 바로 립카페가 갖고 있는 신통방통한 매력이다. (중략)

주머니 사정이 시원치 않은 남자나 시간이 없는 남자들도 립카페는 들락거리기 딱 좋다. 자동 안마기기도 있어 안마와 커피, 그리고 여성이 입으로 해주는 ○○○○까지 3종 세트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들러 후딱 즐기기에 더할 수 없이 좋다.

일단 립카페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면 여자가 ○○를 물수건으로 쓱쓱 닦아준 뒤 손으로 살살 만지다 바로 입으로 해준다. 갑자기 따뜻해지니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사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해주는데, 언니들은 갈고닦은 실력으로 빨리 사정시키기 위해 특별

노하우가 있겠지만 스킬이 다르고 레퍼토리도 있다. 게다가 하해(河海)와 같은 아량으로 입에다 멋지게 부릴 수 있게 해준다. 매몰찬 알람이 삐비빅 삐비빅 울리면 기분은 확 깨지만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큼 너무너무 좋다. 마치 길 가다 생판 모르는 예쁜 여성이 ○○○○를 해주는 듯로도 맞은 느낌이다.

더 화끈하려면 흘랑 벗는 올탈(?)과 옷통만 벗는 상탈(?)에다 여자 둘이 번갈아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체위도 할 수 있다. (중략)

아내들이여, 테크닉을 전수 받으러 립카페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립카페’라 지칭되는 퇴폐업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해당 퇴폐업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5장 자살관련 보도

### 사례. 23

의결번호	제2018-22호
매 체 명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12월 19일자 14면
기사제목	‘샤이니’ 멤버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 1. 보도내용

「(전략) 경찰 관계자는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 있는 ○○○○에 ○○이 타고 있었다.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탄의 한 종류인 ○○은 건설현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인다. 종종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다 질식사고가 난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을 사용한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4**

의결번호	제2018-282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월 23일 사회면
기사제목	“밥 좀 챙겨먹어” 집주인에게 남긴 670만원

### 1. 보도내용

「(전략) 사건을 수사한 부산 ○○경찰서 홍○○(○○) 경장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줬다. “농약으로 음독(飲毒)자살한 시신은 속이 타 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장씨는 반듯이 누워있어요.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잠든 것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시신이 ‘고통의 흔적이 없이 홀가분해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6장 폭력묘사

### 사례. 25

의결번호	제2018-660호
매 체 명	노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8일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유영철보다 더한 싸이코” 데이트 폭력 폭로

#### 1. 보도내용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때리다가 (내가) 죽으려고 하니 몸을 막 흔들고는 ‘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없다’며 갑자기 무기를 찾더니 보온병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몇 시간 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울다가도 또 웃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속적인 폭행은 물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남자친구는) 평생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나(남자친구)는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어 봤으니 이젠 널 자살하게 해줄게, 광주 바닥에서 걸레로 질질 기어 다니게 해준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자친구는 이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뒤 ‘오빠 저는 걸레입니다 좀 먹어주세요 10번 외쳐’라며 강요하고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장면 및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6

의결번호	제2018-100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2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 1. 보도내용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제하의 사진

© 원사미트

### 핫이슈

#### '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1000 기사

업데이트 : 2018-08-28 17:20:51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7장 충격·혐오감

### 사례. 27

의결번호	제2018-679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24일 시사면
기사제목	새끼말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 1. 보도내용

「새끼말게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가 불태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8**

의결번호	제2018-1184호
매 체 명	아시아경제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0월 31일 사회면
기사제목	“뼈가 몸에 좋다?”…중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 1. 보도내용

「“뼈가 몸에 좋다?”…중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제하의 사진



뼈가 잘려나간 채 발견된 코뿔소의 처참한 모습. 사진 = Loweld Rhino Trust

국에서 목종이는 호랑이 상골 수오를 차우기 위하 타국 호랑이 시원에서 담근 호랑이술 사진 = 54연합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호랑이가 병에 담겨 있는 장면, 코뿔소가 뿔이 잘려 죽어있는 장면 등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9

의결번호	제2018-1246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22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1. 보도내용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제하의 사진 및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본에서 기업 회장이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을 강제로 집어 넣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8장 기사형 광고

### 사례. 30

의결번호	제2018-582호
매 체 명	디트news24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6일 기타면
기사제목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 1. 보도내용

「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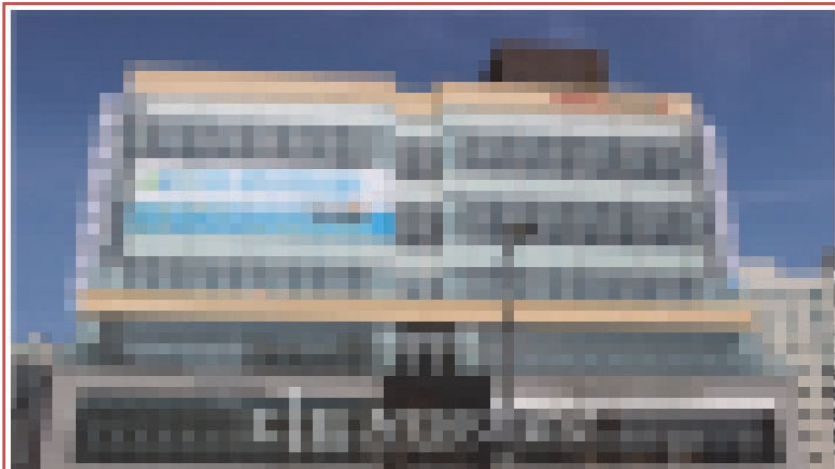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제하의 사진

HOME > 보도자료 > 기타

세종시 ○○○○에 ○○○○ 5일 개원

김○○ 기자 | 승인 2018.03.06 09:53 | 댓글 2

○○○○ 전문의 대표원장, ○○○○○ 빌딩 ○층에 종합검진시스템 구축



세종시 ○○○○

「세종시 ○○동에 세종○○의원이 5일 개원했다. 세종○○의원은 ○○○○로 ○○○○○ 빌딩 ○층에 자리 잡았으며, 264㎡ 규모다. (중략)

세종○○의원은 진료실, X-ray실, 임상병리실, 기초검사실, 내시경실, 초음파실, 수액실 등을 갖췄으며, 대학병원급 장비를 도입했다. (중략)

김○○ 대표원장은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관심과 진심, 사랑”이라며 “세종○○의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항상 밝은 웃음으로 세종시민의 의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